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56494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1. A 주식회사

2. B

3.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변론 종결2020. 10. 29.

판결 선고2020. 12. 10.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1,314,310원과 그 중 737,818,180원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2020. 7. 27.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A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1)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8. 12.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4. 16. 접수 제205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무역보험법에 의하여 설치된 법인이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전기, 전자, 통신기기, 기구 및 관련 부품의 개발, 제작,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8. 8. 20.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신용보증 한도액 729,000,000원, 보증기간 2018. 8. 21.부터 2019. 8. 2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고, 피고 A의 대표이사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등 일체의 채무에 관해 연대보증했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를 '공사', 피고 A를 '본인', 피고 B을 '보증인'이라 한다)

제7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즉시 이를 공사에 통지하고 공사가 보증하고 있는 채무를 상환하겠으며, 이 경우 공사가 사전통지·최고 등이 없이 사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1.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의 신청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2. 폐업하였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조세공과를 체납하여 압류를 당한 때
4. E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 정보 포함),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6. 공사의 본인을 위한 신용보증부 대출 관련 은행이 다수인 경우 그 중 어느 은행으로부터라도 공사와 은행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7. 수출계약서에 근거한 개별 보증방식의 보증서에 따른 보증부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수출계약상 선적기일까지 선적하지 못하였거나 제2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8. 이 약정서 제5조와 제17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이 약정의 위반 등 본인에게 책임지울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내용 이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8조(보증채무 이행금 등의 상환)

① 본인과 보증인은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공사에 상환하겠습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신용보증부대출 원금 및 약정이자)
2. 보증채무 이행으로 공사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② 본인과 보증인은 제1항의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공사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공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공사에 상환하겠습니다.

③ 본인과 보증인은 공사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에 공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공사에 상환하겠습니다.

1.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공사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2항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내보상요령을 두고 있으며, 국내보상요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인 피고 A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 10%이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 1) 원고는 2018. 8. 21. D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했고, 피고 A는 다음날인 같은 달 22. D은행으로부터 8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2) 피고 A는 2019. 4. 23. D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연체 및 사업장 폐쇄를 이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 이에 D은행은 같은 해 5. 9.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했고, 원고는 같은 해 8. 22. D은행에게 대출원리금 737,818,180원을 대위변제했다.
- 3) 원고는 위 대위변제 과정에서 구상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3,496,130원을 지출했다.

라. 피고 B와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피고 B는 2018. 12. 31.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19. 4. 16.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4. 16. 접수 제2050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 피고 A, B: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다 제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41,314,310원(= 대위변제금 737,818,180원 + 채권보전비용 3,496,130원)과 위 돈 중 대위변제금 737,818,18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9. 8.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20. 7. 27.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선 인정근거와 을다 제1, 8, 9, 13,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A의 재정상태, 거래현황 등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체결되었다.

② 피고 A는 G은행 마곡지점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일인 2018. 12. 31. 200,000,000원을 대출받는 외에 2019. 3. 28. 10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는데, 당시 피고 A의 신용등급은 BBB였다. 신용등급 BBB는 '양호한 상거래 신용도가 인정되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다소 제한적인 수준'을 의미하며, 국내 신용조사 대상 기업 중 BBB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은 8% 정도에 불과하고,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BBB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의 부도율은

0.06%에 불과했다. G은행 마곡지점은 위 각 대출 당시 피고 A의 신용상태를 확인 후 대출을 실행했다.

③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이익잉여금이 총 1,949,445,988원, 당기순이익이 393,896,508원이었다. 피고 A는 2019. 4. 17. 주식회사 H에 대한 기업대출 연체 및 같은 해 5. 28. 주식회사 I 대출 연체가 각 발생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연체가 없었고, 피고 A와 피고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를 포함하여 2011. 1.경부터 2019. 6.경까지 전자부품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A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18. 12. 31.경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18. 12. 31.에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사고는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9. 4. 23.에 발생했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이 지난 2019. 8. 22. D은행에 대한 피고 A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했다.

⑤ 피고 A가 2019. 4.경 사업장을 폐쇄한 이유는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금 상환 요청이 동시에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19. 5. 16., 기술보증기금은 2019. 5. 21., K 주식회사는 2019. 6.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가압류를 하였다.

나. 소결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보전채권 존재를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도영

판사신동주

판사이효은

별지